



가마로강정 정보공개서

(주)마세이코

본 정보공개서는 열람, 계약체결, 법원제출 등의 용도 외 무단복제,
제3자에 대한 유출 및 공개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 20120100651]

<http://www.gamaro.co.kr>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2년 12월 3일]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년 12월 22일]

[가마로강정]

정 보 공 개 서

[(주)마세다린]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____ . ____ . ____ .

[(주)마세다린]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를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12773 경기도 광주시 오포로 141-5]

[가맹본부의 대표 전화번호 : 1588-7258]

[가맹본부의 대표 팩스번호 : 031-768-9377]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사업부 / 1588-7258]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인사말	-----	1
2.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2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7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등	-----	18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9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27
7.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42
8.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44
9.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46
10.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47

※ 별첨서류

[별첨1] 가맹본부의 대차대조표

[별첨2] 가맹본부의 손익계산서

[별첨3] 공급상품

[별첨4] 가맹금예치신청서

[별첨5] 장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 현황

1. 인사말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지식으로 고객감동 실현

(주)마세다린은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지식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1999년 테이크아웃형 저가 치킨점을 운영하면서 얻은 성공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2003년 4월,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고급화’, ‘차별화’ 전략을 내걸고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철저한 경영원칙 아래 고품격 치킨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치킨시장에서 리딩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7년간 한결같이 지켜온 ‘고객을 향한 정직한 맛’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경영혁신과 현장교육을 바탕으로 가맹점과의 신뢰구축에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 2012년 4월 30일 “가마로강정”이란 브랜드를 새로이 탄생 시켰습니다.

옛 추억을 회상케한 고품격 치킨 문화선도

(주) 마세다린은 닭다리 순살정육과 제일 잘 어울리는 프리미엄급 해바라기씨유에 튀겨내 바삭하고 매콤 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기존 치킨점에서 볼 수 없었던 재래식 무쇠솥 가마를 이용한 순살치킨을 고온과 빠른 시간에 바삭하고 고소하게 튀겨내 남녀노소 구분없이 누구나 저렴하게 즐길 수 있으며 옛 추억을 회상하며 치킨도 추억의 요리임을 고객들에게 어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옛 추억’의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고품격 치킨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주)마세다린은 새로운 한국형 프랜차이즈 모델을 창출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옛 추억을 뜻하는 [가마로]와 [강정]이 조합된 신조어로 [가마로강정]이라는 대중적 아이템과 웰빙을 접목하면서 대중적인 명품 아이টে으로 자리할 수 있었으며, 옛것과 현재의 특화된 장점만을 모아 불황을 모르는 대중성 높은 안정적인 사업 아이টে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외식 아이টে을 중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치킨사업]입니다.

외식시장의 지속적인 수요로 인해 가격경쟁력과 품질, 옛 추억, 서비스를 보다 차별화하여 소비시장을 공략한다면 그 어떤 경쟁에서도 뒤쳐지지 않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주) 마세다린은 올해를 사업전개 18년차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메뉴개발과 브랜드 제고 마케팅, 운영시스템, 경영 이익 연구 등 고객감동을 최우선으로 대한민국 대표 명품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마세다린 임직원 일동

2.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1) 가맹본부의 설립일 : 2003년 8월 25일
- (2) 가맹본부의 사업자 등록일 : 2003년 8월 25일
- (3) 가맹본부의 법인설립등기일 : 2003년 8월 25일
- (4) 사업자등록번호 : 129-81-65303
- (5) 법인등록번호 : 131111-0101558

나.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 (1) 가맹본부
 - 상호 : (주)마세다린
 - 명칭 : 가마로강정
 - 영업표지 :



- 본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141-5
- 대표자 : 정 태 환
- 대표전화번호 : 1588-7258

(2) 특수관계인

☞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사용인 (임원)	정태환	가마로강정 외 1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141-5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태환	1588-7258	031-768-9377


다. 가맹본부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가맹본부 및 국내에서 영업 중인 특수관계인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국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경우 해당 기업의 명칭,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이름
 ☞ 해당사항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마. 귀하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앞으로 [가마로강정]이라 합니다)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가마로강정	-
상 호	가마로강정 0 0 점	-
상표(서비스표)		-
광 고	해당없음	-
그 밖의 영업표지	,	


바. 가맹본부의 직전 3개 사업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별첨 1~2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으며, 그 근거자료는 [별첨]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 VAT별도)

연도	자산총계	자본총계	부채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4,953,460	1,434,200	3,519,260	20,989,510	697,349	548,036
2023년	7,367,665	1,953,055	5,414,609	21,718,546	466,370	518,855
2024년	7,719,065	2,202,784	5,516,280	22,677,459	490,719	249,728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사. 가맹본부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성명	직위	개인별 경력	
			기간	경력내용
가맹사업 관련임원	정태환	대표이사	2003.04 ~ 현재	(주)마세다린 근무
	백승곤	이사	2012 ~ 현재	GM TEChnical Center
			2020.12~현재	(주)마세다린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유성권	이사	2020.12~ 현재	(주)마세다린
	한미선	감사	2016.07~현재	다인홀딩스
			2020.12~현재	(주)마세다린

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

☞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기 준	임원수		직원수	비고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3	34	-







자.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마세다린/사바사바치킨앤비어	치킨 호프 가맹사업 경영	2003.8. ~ 현재	사바사바치킨 앤 비어 (등록번호 : 20080200049)라는 브랜드의 치킨호프 전문점 경영

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이미지)	권리내용	출원 여부(일자) 등록 여부(일자)	출원번호 등록번호	등록권리자	등록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권 (제29, 43류)	출원(2012.02.08) 등록(2013.05.07)	출원 4520120000573 등록 4500447070000	(주)마세다린	2033.05.07
	상표권 (제29, 43류)	출원(2012.02.08) 등록(2014.02.21)	출원 4520120000572 등록 4500482770000	(주)마세다린	2034.02.21
	상표권 (제29류, 43류)	출원(2012.05.14) 등록(2013.05.07)	출원 4520120002487 등록 4500447080000	(주)마세다린	2033.05.07
	상표권 (제25류, 39류)	출원(2014.09.19) 등록(2015.09.03)	출원 4520140007440 등록 4500587760000	(주)마세다린	2035.09.03
	상표권 (제29, 43류)	출원(2012.05.14) 등록(2013.05.07)	출원 4520120002489 등록 4500447090000	(주)마세다린	2033.05.07
	상표권 (제29, 43류)	출원(2018.11.14) 등록(2019.10.11)	출원 4020180157366 등록 4015309920000	(주)마세다린	2029.10.11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기타 인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경기도 Gyeonggi-do</p>	<p>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p>
--	--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짜 : 2012년 4월 30일

나. [가마로강정]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명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마세다린	가마로강정	정태환	2012. 4. 30. ~ 2013. 6. 2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31 성호빌딩 10층
(주)마세다린	가마로강정	정태환	2013. 6. 21. ~ 2017. 11. 1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97번길 35, 2층 (동천동)
(주)마세다린	가마로강정	정태환	2017. 11. 20. ~ 현재	경기도 광주시 오포로 141-5

다. [가마로강정]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가마로강정	치킨	닭강정

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33	126	7	136	129	7	139	128	11
서울	43	41	2	47	44	3	48	43	5
부산	10	9	1	10	9	1	10	10	0
대구	,	,	,	,	,	,	,	,	,
인천	9	9	,	9	9	,	10	9	1
광주	1	1	,	1	1	,	1	1	,
대전	1	1	,	1	1	,	2	2	,
울산	,	,	,	,	,	,	,	,	,
세종	1	1	,	1	1	,	,	,	,
경기	53	50	3	53	52	2	55	51	4
강원	2	1	1	2	1	1	2	1	1
충북	,	,	,	,	,	,	,	,	,
충남	2	2	,	2	2	,	2	2	,

전북	2	2	,	1	1	,	1	1	,
전남	,	,	,	,	,	,	,	,	,
경북	,	,	,	2	2	,	2	2	,
경남	7	7	,	6	6	,	6	6	,
제주	,	,	,	,	,	,	,	,	,

가마로강정 가맹점별 사업자 현황

(기준:2024.12.31)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마.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해지, 명의 변경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의 수

☞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사업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증감
2022년	138	4		16	6	126	-12
2023년	126	14		12	10	129	3
2024년	129	11		12	6	128	-1

바.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및 사업 시작일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다음과 같습니다

(2024.12.31.기준 / 단위 :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주)마세다린	사바사바 치킨앤비어	20080200049	치킨호프	5/0	4/0	4/0

사.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 매출액으로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공급액 × 추정비율()]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 원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물품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40%~43%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며, 2024년 6개월미만 영업 매장을 제외한 6개월 이상 영업한 매장의 매출액을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128개중 6개월 이상 운영매장 114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다음과 같습니다.

(2024.12.31.기준 / 단위 : 천원 / VAT포함)

지역 구분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상 한		하 한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3.3m ²) 당 매출액	상한	면적(3.3m ²) 당 매출액	하한	면적(3.3m ²) 당 매출액	
전체	128	353,545	33,226	1,339,575	150,514	39,576	4,674	영업 6개월 이상 가맹점 114개 대상
서울	43	401,725	38,481	1,339,575	150,514	68,993	7,262	영업 6개월 미만 5개 가맹점 제외
부산	10	182,735	19,035	294,744	46,785	70,767	11,676	영업 6개월 미만 1개 가맹점 제외
대구	,	,	,	,	,	,	,	
인천	9	343,788	28,282	630,684	47,066	163,106	11,021	
광주	1	,	,	,	,	,	,	5개매장 미만 해당사항없음
대전	2	,	,	,	,	,	,	5개매장 미만 해당사항없음
울산	,	,	,	,	,	,	,	
경기	51	386,069	34,961	816,381	67,666	39,576	7,570	영업 6개월 미만 4개 가맹점 제외
강원	1	,	,	,	,	,	,	5개매장 미만 해당사항없음
충북	,	,	,	,	,	,	,	
충남	2	,	,	,	,	,	,	5개매장 미만

								해당사항없음
전북	1	,	,	,	,	,	,	5개매장 미만 해당사항없음,
전남	,	,	,	,	,	,	,	5개매장 미만 해당사항없음
경북	2	,	,	,	,	,	,	5개매장 미만 해당사항없음
경남	6	191,777	19,589	363,587	40,399	41,135	4,674	
제주	,	,	,	,	,	,	,	

※ 참고 : 전체 매장중 영업일수가 6개월 미만인 13곳 가맹점은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 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제외 매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 올림픽성내점(양수), 망우역점(양수), 미아사거리역점(신규),상암점(휴점),
 낙성대점(포스영영업일 6개월미만)

경기 : 동산동점(양수), 미사역점(신규), 김포운양점(양수), 동탄센트럴파크점(신규)

대전 : 대전둔산점(신규)

충남 : 공주신관점(휴점)

부산 : 동래점(가맹점 신규)

경상북도: 구미신평점(휴점), 구미상모점(신규)

아.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관리지역 및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관리하는 가맹점 수
 ☞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가마로강정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가마로강정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수	평균 영업기간
2024년도	128	68 개월

차.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의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024.12.31.기준 / 단위 : 천원 / VAT미포함)

구 분	수단별 항목	비 용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109,213	(비공개)	-
광고비	소계	50,004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
		-	-	-
		(비공개)	(비공개)	-
		-	-	-
		(비공개)	(비공개)	-
판매홍보비	소계	59,209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
				-
		(비공개)	(비공개)	-

※ 위 내용은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 비중 가마로강정 가맹사업 관련 광고비와 판촉비 내용입니다.

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와 소재지	예치업무 담당 부서와 전화번호
----------	-----------------	------------------

하나은행 창신동 지점	서울 종로구 종로 347 롯데캐슬 천지인	02) 766-1111
----------------	------------------------	--------------

※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비/교육비/보증금을 [하나은행] 에 [계약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하나에스크로(www.hanaescrow.com) 프랜차이즈 하나B2B에스크로 메뉴에서 “예치서비스”
 를 클릭한 다음 (주)마세다린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
 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
 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카.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사실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여부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나.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의 부담

귀하가 [가마로강정]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별도사항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

☞ 최초 가맹금은 모두 동일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VAT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5,500,000	계약체결일	영업 개시 이전에 계약해지	.OPEN 전 : 이미 제공된 서비스(입지선정 정보제공 및 자문비, 상표.상호.로고.디자인.서비스표 등 사용료, 점포 유지 관리비, 광고 판촉비, 영업지역 보호비, 교육생 식비, 조리 교육실습 재료비, 각종 매뉴얼 제공비)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하여 반환함 .OPEN 후 : 반환하지 않음
교육비	2,200,000	계약체결일	교육 개시 이전에 계약해지	.교육개시 전 : 전액 반환 .교육개시 후 : 반환하지 않음

※ 공제금 내역 : 입지선정, 정보제공 및 자문비, 상표.상호.로고.디자인.서비스표 등 사용료, 점포 유지 관리비, 광고 판촉비, 영업지역 보호비, 교육생 식비, 조리 교육실습 재료비, 각종 매뉴얼 제공비

2) 계약이행보증금 등

☞ 계약이행보증금은 가맹이행보증금과 물류이행보증금으로 구분하고, 이 금액은 물품대금 등의 잔존 채무 및 손해배상액 정산 후 계약 종료시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단위 : 원/VAT없음)

구분	금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가맹이행 보증금	1,000,000	계약체결일	-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복구의무)의 미이행	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8일 이내에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잔액을 상환
물류이행 보증금	1,000,000		-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단위 : 원/VAT포함)

구분	금액
합계	9,700,000
가맹비	5,500,000
교육비	2,200,000
계약이행보증금, 물류이행보증금	2,000,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단위 : 원/VAT포함/39.6㎡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비고
총계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주 자율	34,925,000	2,400,000	오픈 전일 전액 지급		본사 시공시
인테리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주 자율	31,680,000	2,400,000	※ 가맹본부 시공 및 구입시 인테리어,간판,외부공사,주방기 기및집기,테이블 총비용에 대하여 3회 분납 1. 시공시작일 : 총금액의 30% 2. 1주일 후 : 총금액의 40% 3. 오픈 전일 : 총금액의 30% ※ 감리비 지급시 : 시공 시작 이전 전액 지급	공사 전 계약 취소	12평 기준 (39.6㎡미만도 39.6㎡로 일괄 적용) 39.6㎡ 초과 시3.3㎡당 240만원초과 부담
간판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주 자율	3,245,000			설치 전 계약 취소	추가 간판 별도
외부 (별도) 공사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주 자율	별도 사항			공사 전 계약 취소	전면 금속공사, 외부 공조설비 입상 공사, 하수도공사, 철거공사, 가스 시설공사, 냉난방공사, 소방공사, 전기증설공사, 건물벽 방수공

					사 등 항목별 선택사항
주방기기 및 집기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주 자율	별도 사항			입고 전 계약 취소
테이블 및 의자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주 자율	별도 사항			입고 전 계약 취소
초도상품 및 음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주 자율	별도 사항			입고 전 계약 취소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공급 품목 및 지급대상은 가맹본부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① 귀하가 인테리어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로부터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이하 “감리”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당사는 귀하에게 직원을 파견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는 당사의 감리를 받지 않고 직접 시공할 수 없으며, 당사의 직원 파견 및 감리에 대한 대가로 감리비 [39.6㎡ 미만은 330만원, 39.6㎡이상은 550만원(VAT 포함)]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주방기기 및 집기, 테이블 및 의자, 초도상품 및 음료는 가맹점주의 자율구매가 가능하나,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가맹본부에서 정한 규격품 또는 상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④ 그 밖의 영업신고 및 교육, 사업자 등록발급, 전화 개설, 유선 방송, 각종 인 허가 등에 따른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자체 부담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기준

☞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선정 절차
가맹점사업자	주거인 70%, 유동인구20%, 충성고객10% 구성으로 기준을 하나, 입지와 상권 정황에 따라 구성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음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 통지

※ 가맹본부는 점포 개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과 영업예상매출 자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내' 가장 인접하고 유사한 인근 가맹점 5개를 5곳 등의 정보 제공을 하고 최종 의사 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내립니다. 가맹희망자의 입지 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비고
가맹점사업자	고졸 이상의 학력	한정자산자, 금치산자가 아닐 것	- 고객만족을 최우선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줄 알며, 도전, 화목 정신이 있어야 하며 모든 일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종업원	고졸 이상의 학력	만19세 이상으로 신체 건강하고 용모가 단정한 자	- 고졸 이상 학력을 원칙으로 하나 시대변화에 빨리 적응할 줄 알고 신뢰를 바탕으로 본부의 컨셉을 빨리 이해할 줄 아는 사람.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가마로강정]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영업 중의 부담

1)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지급 대상자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교육 훈련 비	오픈 지원 교육	가맹본부 본사 조리바이저 1일 1인기준 150,000	최초 교육비에 포함	반환 안됨	교육비 내역에 포함사항
	특별 교육	가맹본부 본사 조리바이저 1일 1인기준 150,000	교육 실시 전	교육 개시 전 전액 반환	교육 개시 후에는 반환 불가
	재 교육	가맹본부 상등 150,000	교육 실시 전	교육 개시 전 전액 반환	교육 개시 후에는 반환 불가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총광고료 50% 중 각 가맹점사업자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광고 실시 전	전국광고를 시행할 경우 지급하는

		분담분 (물류매출액기준)	2주 이내		금전이므로, 광고 시행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자연이자	가맹본부	지급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후 지체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일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협의하여 결정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변경 전	간판을 변경한 후에는 반환 불가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협의하여 결정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교체.보수 전	교체.보수한 후에는 반환 불가

- ☞ 상표사용료, 리스료, 간판류 임차료,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비용 등은 받고 있지 않으며, 리모델링 사유 발생시 별도로 산정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 콜센터 운영비 - 매월 가맹점에서 본사에게 지급

2)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의 거래를 통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 ☞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재고관리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를 감독하는 내역

- ☞ 재고관리에 대하여는 별도로 감독하지 않으며,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감독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요청하는 경우 매출상황 및 회계원장을 제공하여야 하며,
월 매출현황에 대하여는 매월 5일 지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 포함)하기 위해서는 재가맹비를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금액은 재계약 당시의 신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가맹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VAT별도)으로 합니다. 단, 가맹본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동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VAT 별도)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재가맹비	당해 년도 가맹비의 10%	재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재계약 이전 반환	재계약 이행 시 반환불가	갱신기간 1년
기타	본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훈련비	교육실시전	교육개시 전 전액 반환	교육 개시 후에는 반환 불가	필요시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양도인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가맹점운영권을 이전받는 양수인은 신규계약과 동일한 비용의 가맹비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와의 가맹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은 가맹계약의 종료일(양도일)로부터 8일 이내에 정산하여 상환해 드립니다.

다만, 잔존 채무(물품대금 포함) 손해배상액 등이 있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잔존채무(물품대금,공사대금)등 가맹본사에 납부해야할 손해배상액이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완납을 하셔야 하며 불이행시 사업자양도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맹점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8]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

☞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다음에서 명시한 '가맹계약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가맹계약서 제35조 (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 "갑"은 가맹본부, "을"은 가맹점사업자를 칭합니다.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① "을"은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갑"으로부터 부여받은 제4조 제2항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을 5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기한내에 철거되지 않을 경우 "갑"이 이를 철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철거의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을"이 부담한다. "갑"이 철거할 경우 비용은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정산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③ "을"은 기타 "갑"의 상호 및 상표, "갑"의 사양에 의하여 설계된 시설 인테리어 및 아웃테리어 구조물 등 "갑"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갑"이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 ④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필히 반환하여야 한다.
- ⑤ "을"은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갑"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을"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5일후에도 "갑"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경우 무단 상표 사용에 해당되며, 무단 상표 사용기간에 대하여 1일당 금이십만원(200,000)을 위약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갑"은 "을"에게 정황에 따라 별도의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의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가. 물품구입 및 임차

귀하가 [가마로강정]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여야 할 품목

☞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2024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다.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가마로강정]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공급상품과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취하는 2024년도 경제적 이익

☞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 원/VAT 별도)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다인홀딩스	배우자		(비공개)	

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주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산정기준 및 금액

☞ 당사는 상품 또는 용역을 주문 또는 알선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금전을 받지 않습니다.

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주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산정기준 및 금액

☞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상품 또는 용역을 주문 또는 알선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금전을 받지 않습니다.

바.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당사는 가맹점 사업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오픈지원	가맹점 오픈시 홍보물 및 이벤트물품지원	오픈매장	오픈시	홍보물: 배너,전단지 이벤트 물품 지원 50~100만원상당 의 물품 지원	
교육 지원	가맹점 신규 인력	점주요청시	가맹계약기간	본사 직영점	

	채용후 교육이 어려울 경우 본사 무료교육 진행			무료교육 진행	
--	------------------------------------	--	--	---------	--

아. 상품 또는 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 가)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 다음과 같습니다.

(2024.12.31.기준)

판매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트리플 (3가지 맛) 더블 (2가지 맛) 싱글 (1가지 맛) 컵, 트리플치즈볼, 근위튀김, 닭껍질튀김,감자튀김	당사에서 지정한 메뉴를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가맹점의 특성에 따라 당사와 합의하여 메뉴 조정 가능합니다.	1차 : 구두경고 2차 : 서면경고 3차 : 상품공급 중단 또는 가맹계약 해지

- 나)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다)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내역은 본사 경영 방침 등의 변경으로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제한내용

- 가)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해 상품 .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경쟁업체 / 다른 가맹점 사업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 부터 공급받는 상품, 제품 및 식용유 등 모든 물품	- 제한내용 :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위반시 책임 :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가맹계약 해지

- 나)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판매가격의 결정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당사가 제시한 권장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권장가격은 당사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가격이며, 자세한 내역은

☞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VAT 포함) (2024.12.31.기준)

판매 상품명	권장가격	판매 상품명	권장가격
트리플	32,000	트리플(배달)+음료+치킨무	34,500
더블	22,000	더블(배달)+음료+치킨무	24,500
싱글	12,000	싱글(배달)+음료+치킨무	14,500
컵	7,000	트리플치즈볼	6,000
근위튀김	12,000	닭껍질튀김	12,000
튀김범벅	12,000	감자튀김	5,000
콜라 500ml	2,000	사이다 500ml	2,000
콜라 1.2L	3,000	사이다 1.2L	3,000
치킨무	500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당사에 문서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및 권장 가격은 본사 경영 방침 등의 변경으로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영업지역 보호

1) 영업지역 보호 제도 유무와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여부

-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 하고 있습니다.
-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 ·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닭강정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가마로강정	없음
-------------------	-------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특수상권(백화점,마트,시장,지하상가,공항,호텔,역세권등)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와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경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된느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당사 담당자 검토→영업지역 변경(안) 작성→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있어서 배타적이고 독점적 영업을 실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계약체결시 약정한 영업지역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가마로강정]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④ 각 가맹점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공동 영업지역으로 정하며 어떤 가맹점사업자도 독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신규가맹점사업자 확정시 각 가맹점에서는 광고, 홍보, 배달등의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신규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에 어떠한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또는 요구 할수없다.
- ⑤ 다만 인근 가맹점사업자들과 모두 협의시 영업행위가 가능하나 이때 그 협의 내용을 가맹본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반드시 가맹본사의 승낙하에만 영업행위가 가능하다.
- ⑥ 위 ①②③④⑤항의 위반으로 분쟁 발생시 분쟁유발 가맹점에서 상대 가맹점들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영업 시작전 필히 인근 가맹점이나 가맹본사에 반드시 승낙하에만 영업행위를 하여야합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2024.12.31. 기준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 내역이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2024.12.31. 기준으로 온라인 판매

구분 ^①	유통업체명 ^②	주소	취급품목 ^③	가맹점과의 구분 ^④
온라인	(주)골드플레이트	www.aa.co.kr	2종류 (매콤한맛,달콤한맛)	온라인 냉동 레포르제품으로 가맹점 판매 메뉴와 차이 있음

- ① 온라인몰,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유통채널의 성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② 유통업체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 ③ 해당 유통채널에 공급하는 모든 품목을 기재합니다.
- ④ 해당 유통채널이 본 정보공개서의 가맹사업과 구분되는 점을 기재합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가맹본부와의 합의 하에 하여야 합니다.

차. 가맹본부의 온·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4	90.5%	9.4%		0.1%

- ① 매출액 비중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며,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해당 채널의 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 ② 기타 온라인 매출액이란 가맹본부가 자사 온라인몰을 제외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과 온라인 채널에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4	0%	10.7%

- ① 오프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가맹점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 ② 온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온라인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카.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계약의 기간

☞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가맹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 재 계약 또는 갱신시 계약기간 : (갱신계약일로부터) 1년

2) 계약 갱신 거절 사유

☞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는 계약의 기간만료로 인하여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다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가맹계약서 제6조 (계약기간과 갱신) : "갑"은 가맹본부, "을"은 가맹점사업자를 칭합니다.

1. "을"이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을"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을"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갑"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갑"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초 가맹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약기간의 갱신은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 당사자의 상호간의 이의가 없을시 1년씩 연장이 가능 합니다. 다만,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할 때에는 당해 가맹비의 10%(VAT별도)를 재 가맹비로 계약종료 3일전까지 부담해야 하며, 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 전에 가맹점 사업자 또는 가맹본부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의 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D-90
② 2)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⑧	D-180~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4) 계약 종료 및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계약서 제34조 각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다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 제34조 (계약의 해지) : “갑”은 가맹본부, “을”은 가맹점사업자를 칭합니다.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 가맹계약서 제25조 (상품공급의 중단)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참고1.)
2. 가맹계약서 제13조 (개점승인)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참고2.)
3.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참고1. 가맹계약서 제25조 (상품공급의 중단)

“갑”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3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한 후 “을”에 대한 상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 공급조건을 지체없이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을”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2. “을”이 “갑”의 사전 동의없이 “갑”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3. "을"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4. "갑"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갑"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갑"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5. "을"이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7. "을" 또는 "을"의 직원이 제11조 제1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8. "을"이 제6조 제5항 및 제14조 제2항에 따른 재가맹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9. "을"이 제17조 제 1항 내지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10. "을"이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1. "을"이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을"이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과 영업관리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13. "을"이 제2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동의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추가하거나 "갑"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4. "을"이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을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15. "을"이 3회 이상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16. "을"이 제22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7. "을"이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하거나 제2항에 의한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18. "을" 또는 "을"의 직원이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갑"이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9. "을"이 제2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0. "을"이 제29조 규정에 의한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1. "을"이 "갑"과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2. "을"이 "갑"의 사전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23. "을"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갑"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참고2. 가맹계약서 제13조 (개점승인)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개점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1. "갑"이 정보공개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오픈시 필요한 상품과 물품, 기타 장비의 공급 주문을 "을"이 완료하지 않아 개점을 할 수 없는 경우
2. "을"의 가맹점에 적정 직원이 채용되지 않아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을"이 제8조 내지 제12조의 이행을 완전하게 완료하지 못한 경우
4. "을"이 개설비용의 지급을 가맹점 개점 전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의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개점이 연기되는 경우

◆ 참고3. 가맹계약서 제5장 제13조 (계약의 해지)

②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을"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 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하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을"이 가맹점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을"이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갑"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 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갑"이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을"이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③ 가맹점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가맹본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 제정·개정 에 따른 경우 : 사전 통보 및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 양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수정 : 서면합의로 결정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완료	- 수정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2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발생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내용 적용

차.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에 필요한 절차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가맹계약을 맺고 있으며,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기 7일 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가맹본부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단,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합니다.
- ② 가맹본부가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당사의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규계약과 동일한 비용의 가맹비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전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사는 귀하에 대한 양도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④ 귀하의 양수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비 외 파견직원에 관한 비용은 1인당 1일 기준 150,000원(VAT별도)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⑤ 양수인과 가맹본부와의 금전지급 의무가 원할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승인이 철회될수 있습니다.
- ⑥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수도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은 부모, 부부, 자녀에게만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가능	모든 권리 . 의무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음, 다만 상속인은 부모, 부부, 자녀에게만 한함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 이에 당해 교육비	최초 가맹금 면제

			100%(VAT별도)를 부담 하여야 한다. 단, 상속인이 이미 교육을 이수한 경우라면 그러지 아니 한다.	
대리경영	가맹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 의무	원칙으로는 대리 경영을 할 수 없으나,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하에만 대행 할 수 있습니다. 대리경영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위탁경영	경영금지	없음	사실상 위탁경영은 양수도 형태로 보이므로 위탁경영 금지함	

3)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 전 지역 내에서] 귀하가 [가마로강정]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일반인에게 치킨 및 닭강정을 테이크아웃과 배달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허가 여부 통지→완료

4)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의 제한에 대한 내용

☞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간의 제한 내용 : 가맹점의 특수성 및 상권에 따라 가맹본부와 합의하여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수의 제한 내용 : 가맹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월 27일 이상 개점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특수성 및 상권에 따라 가맹본부와 합의하여 영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SV(수퍼바이저) 또는 본부 직원에게 반드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고용하도록 권장되는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되는 종업원 수 : 2명 이상 (33㎡적용)
- 영업장 근무 강제(X) / 영업장 근무 자율 (0)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감독하는지와 관리·감독하는 항목

☞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점포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상품 취급 여부, 제품의 보관상태 및 위생 상태, 조리상태, 서비스 상태, 재고관리, 회계처리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②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점포 감독은 본사에서 미리 제공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결과를 쌍방이 서명하여 가맹본부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카.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마로강정]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광고	브랜드 광고	50%	50%	광고 세부계획 → 귀하에게 통지 → 분기를 기준으로 광고비 부담내역을 귀하에게 해당 분기의 전달 말일까지 통지 → 귀하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당사에 납입 → 광고시행	TV, 라디오 등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광고
	상품광고	50%	50%		
	가맹점 모집광고	100%	없음	해당없음	
지역단위 광고 및 개별광고	원칙적으로 가맹점의 부담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당사에서 비금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지원 가능함				지역단위 및 개별 광고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매출증대 신규고객 창출 단골확보	없음	100%	원칙적으로 가맹점의 부담이나 사항에 따라 협의하에 부분지원 가능함	할인 서비스 등의 종료시까지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에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한 물류매출액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 및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단독으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경우 광고 및 판촉활동의 자료, 문구,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합의한 후,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얻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귀하 및 귀하의 직원은 당사가 대여하는 운영매뉴얼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의 허가 없이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는 가맹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파.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로 귀하의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 및 필요한 절차

☞ 기간은 모두 약 50일 정도가 예상되며, 그때까지의 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VAT포함)

구 분	내 용	기 간	비용(기본형)	비고
합 계	39.6㎡(12평)기준 / 본사 시공시	약 50일	44,625,000	본사 시공시
상 담	* 전화상담(1588-7258),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www.gamaro.co.kr) 및 오프라인 상담 후 본사방문상담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시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함)	약 1일	비용 없음	
점 포 조 사	* 입지 상권 조사/분석	약 10일	비용없음	
점 포 선 정	* 가맹 물건 확인 (가맹 희망자 선정) * 점포 등기 유무 확인 * 임대차 계약 체결	약 2일	자체비용소요	
가맹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체결 * 교육비 * 가맹금 예치 : 가맹비+교육비+계약 이행 물류 이행보증금	약 1 일	5,500,000 2,200,000 2,000,000	

점포실측 및 Layout 확인	* 점포실측 * Layout 협의 후 공사 계약서 작성	약 1 일	비용 없음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감리, 감독 * 점주 조리교육 및接客 서비스 교육	약 30일	1회분 : 13,387,500 2회분 : 17,850,000	공사대금
점포 개점 준비	* 위생교육 및 사업자 등록증 발급 * 개점일 확정 통보	약 1 일	자체비용소요	
개점 준비	* 공사 완료 인수 인계 * 오픈 행사 확인 * 초도 물품 입고 * 오픈 시뮬레이션	약 2일	3회분 : 13,387,500	
개 점	* 오픈 행사 * 오픈 지원 교육 및 지원 * 본사 직원 (주방 3일)	2일	교육비에 포함	
가맹점 사후 관리	* 초기 집중지도 및 관리 * 슈퍼바이저 수시 방문 관리		가맹비에 포함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합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개인 사정, 교육이수 정도, 가맹점포의 여건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위표의 비용은 기본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별도공사 및 주방기물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가맹점 점주 선택 옵션 및 추가 공사 계약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이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나. 가맹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해결 노력을 합니다.
- 양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02-3445-9898, 홈페이지 : <http://www.kofair.or.kr>)
- 관할법원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 및 점포소재지의 법원으로 합니다.

8.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②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③	지급절차 ^④	비용부담 제외사유 ^⑤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바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p><분할지급 시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해자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합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 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 VAT별도)

지원정책 ^①	주요 내용 ^②	지원조건 ^③	지원기간	지원금액 ^④	비고 ^⑤
개점행사비	가맹점 오픈시 판촉인원 파견 및 전단지, 기념품 등의 판촉비용 지원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 판촉인원 수 및 판촉비용 차등 지원	가오픈일로 부터 2일간	100만원 한도	
CRM	우수고객에 대한 고객 유입 DM발송	없음 (전 가맹점 해당)	동시 다발성	소요되는 비용 전액 당사 부담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①	절 차 ^②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해당없음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매장운영팀 (1588-7258)

9.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가.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및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최소시간, 비용, 주체, 불참시 불이익 등
☞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훈련 종류	이수강제여부	최소시간	비 용(VAT포함)	피교육자	불참시 불이익
개점 전 교육	유	운영 교육 4일 32시간	220만원	점주 및 조리실, 홀 매장 담당자	개점 연기
		조리교육 16일 128시간		점주 및 조리실, 홀 매장 담당자	
오픈 지원 교육	유	주방교육 1인 3일	1일 1명 기준 (교육비 포함)	점주 및 조리실, 홀 매장 담당자	개점 연기
		캐셔교육 1인 30시간		점주 및 홀 매장 담당자	
특별 교육	유	2일 1인 기준 총 20시간	1일 10시간 기준 15만원	점주 및 조리실, 홀 매장 담당자	경고조치
재 교육	유	1일 1인 기준 총 10시간	1일 10시간 기준 15만원	점주 및 조리실, 홀 매장 담당자	경고 조치

주방 교육 훈련 일정표				
당사 교육전 실행		개점 전 교육 훈련		오픈전일 1일
위생교육 (한국외식업중앙 회 또는 한국의 식산업협회)	인.허가 실행 (구청,세무서)	운영, 조리, 튀김, 서비스관리, 매장 실전 교육 등 각종 교육 1일 8시간 기준 최종 20일간 이상		개점전 확인 및 오픈 시뮬레이션

◆ 개점전 교육 기간 및 시간표 (장소 : (주)마세다린 본사 내 2층 & 직영점 교육장 인원 : 2인 이상)
☞ 캐셔 교육과 포장교육은 1인이 이수하여도 무관합니다.

날 짜	시 간	교육 내용 및 일정		비 고
		주방 운영관리	홀 운영관리	
1~4일	10:00~19:00	조리이론 / 반죽·튀김·볶음 실습	프랜차이즈 이해 / 위생관리 / 서비스마인드 / 관련 법규	
5~10일	11:00~20:00	반죽·튀김 교육	POS /接客 서비스 교육	
11~18일	15:00~24:00	반죽·튀김·볶음 교육	POS /接客 서비스 교육	
19~20일	11:00~20:00	운영 시뮬레이션	오픈 시뮬레이션	2일
합 계	200 hour	(결과) 미달 시	(결과) 미달 시	개점 연기

※ 상기 교육을 모두 완벽히 이수하여야 개점이 가능하며 교육 담당자의 교육미비 판정시 개점일은 무기한 연장되며 그 책임은 점주에게 있으므로, 교육생 모두는 교육에 열성을 다해 이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10. 가맹점 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가.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가재울사거리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2, 제상가202동 102호
2		장위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40길 46, 제상가5동 1층 2호(장위동)
3		길음역점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11, 상가동 157호(길음동)
4		방배삼호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69, 1층 108호(방배동, 삼호상가)
5		양재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63길 16, 1층 102호
6	경기도	중동점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100, 아이파크상가동 1층 107호(중동, 팰리스카운티)
7		판교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49, 1동 1층 106호(백현동)
8		남성역점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96, 1층 105호(사당동, 거목프리미엄상가)
9		수지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30번길 11, 1층 101호(풍덕천동)
10	인천	도화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 104, 1층 104호(도화동, 와이지프라자)
11	강원	원주기업도시점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495-1 탑프라자 105호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6.7개월	7개매장

※ 직영점 평균 운영기간은 직영점 11개 매장에서 6개월미만 운영 4곳 (길음역점, 방배삼호점, 양재점, 수지점 제외)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③
569,261,109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6개월미만 운영 4곳 길음역점, 방배삼호점, 양재점, 수지점 제외

[※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매출액은 영업일 6개월미만인 가재울사거리점을 제외, 부가세 포함 평균매출액입니다.]

별첨1. 대차대조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2. 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3. 공급상품

별첨 2

공급 원재료·부재료 내역

별첨 2.가맹점사업자가공급받는 상품의 종류및 필수공급상품 가격 결정방식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아래의 품목을 공급받거나, 정해진 규격에 맞게 자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며 하단에 기재한 구입강제품목은 반드시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 결정방식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뒤 쪽)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본 가맹금 예치 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의 예치일 부터 7일 이내에 이 증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첨5. 장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가맹희망자용)

본인은 『가마로강정』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1. 정보공개서 수령일 : _____년 _____월 _____일
2. 정보공개서를 마지막으로 등록한 날 : _____년 _____월 _____일
3.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①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②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③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④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⑥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⑦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⑧ 교육·훈련 프로그램
4. 가맹희망자의 주소: _____
 전 화 번 호: _____ 핸드폰 번호: _____
5.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맹 본부 : (주)마세다린 정 태 환 (인)	수령자 : _____ (인)
---------------------------	-----------------

----- (절취선) -----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본사보관용)

본인은 『가마로강정』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1. 정보공개서 수령일 : _____년 _____월 _____일
2. 정보공개서를 마지막으로 등록한 날 : _____년 _____월 _____일
3.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①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②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③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④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⑥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⑦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⑧ 교육·훈련 프로그램
4. 가맹희망자의 주소: _____
 전 화 번 호: _____ 핸드폰 번호: _____
5.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맹 본부 : (주)마세다린 정 태 환 (인)	수령자 : _____ (인)
---------------------------	-----------------